

### 13. 회사의 분할과 합병 (수능 완성 p.164)

#### 단락 분석

(1단락)

①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이 경우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인 회사 분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③반대로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이다. ④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되었다.

- ① **회사 규모와 생산성** 얘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어.
- ② 규모가 커져서 생산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회사를 분할**해서 규모를 줄이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나봐.
- ③ 규모가 커져서 생산성이 오를 경우도 있네. 그럴 때는 **회사 합병**을 한대.
- ④ 인과(므로)와 비교(보다) 서술은 체크!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 되었다.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지?

(2단락)

①상장 회사인 ‘(주)초롱’이 제과와 제빵 영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분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②만약 제빵을 떼어 내 ‘(주)초롱빵집’을 만든다면 이를 신설 회사라 하고, ‘(주)초롱’은 존속 회사라 한다. ③상장 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결의가 가능하다. ④‘(주)초롱’의 발행 주식 총수가 ‘120만 주’이고 주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60만 주’라고 가정하자. ⑤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인 ‘60만 주’의 2/3인 ‘40만 주’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이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인 ‘120만 주’의 1/3인 ‘40만 주’ 이상의 찬성 수에도 충족되므로 분할을 결의할 수 있다.

- ① 회사 분할을 **예시** 상황을 통해 설명할 건가봐. 이제부터 집중해야겠어. 상장 회사인 (주)초롱 회사를 제과와 제빵으로 분할 시킬 것 같아.

더 내려가기 전에 법인과 주식 회사, 상장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 법인에 대해서는 17학년도 9월 모평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일단, 모든 기업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어. **법인**이란 법적 인격을 말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 기업 혹은 단체에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법적 인격을 인정해주는 걸 뜻해. 법인이 되면 그 기업은 일반 사람처럼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해서 거래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드라마나 뉴스 보면 법카라는 말이 나올텐데 법카가 바로 기업이 만든 법인 카드라고 볼 수 있어.

법인 내에서도 다양한 분류로 회사나 단체를 나눌 수 있어. 그중에 **주식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말해.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엄청 대단히 매우 많아서 애플이 발행한 총 주식 중 반 정도를 샀다면 나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애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주식 회사 중에서도 증권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 회사**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증권 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두 곳이 있는데, 만약 내 회사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면 내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 거래되면 코스닥에 상장된 상장 회사라고 할 수 있어. 증권거래소에서는 공신력(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깐깐한 상장 심사로 믿을 만한 기업만 상장시켜주기 때문에 상장 회사가 되면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을 모으기에도 훨씬 용이해지고, 내 회사가 '튼튼한 기업'이라는 인증이 된 거라 시장에서도 단단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

자, 이제 다시 읽어 내려가자!

- ② (주)초롱(존속 회사)에서 제빵을 분리해 (주)초롱빵집(신설 회사)을 만드는 상황을 제시했어.
- ③ 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통해 회사 분할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대. 왜 회사 대표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냐고? 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주주) 모두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문장을 보면 **의결권 찬성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찬성 수가 각각 정해진 기준(2/3, 1/3)을 넘어야 된다고 구분**했으니 꼭 기억해두자. 문제로 무조건 출제될 테니까!
- ④ ③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또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발행 주식 총수가 120만 주, 출석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60만 주.
- ⑤ 출석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의결권이라고 하는 거구나. 두 가지 기문을 모두 충족해서 회사 분할을 할 수 있대.

(3단락)

①분할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 순자산은 분할 비율에 따라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가 나누어 갖는다. ②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③만약 이 값이 0.3이라면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0.3배를 갖게 되며, 나머지는 존속 회사가 갖게 된다. ④즉 '(주)초롱'의 순자산이 100억 원이라면, 분할 후 순 자산은 '(주)초롱'이 70억 원, '(주)초롱빵집'은 30억 원이 되는 것이다.

- ① **회사를 분할하는 비율**에 따라 존속 회사인 (주)초롱과 신설 회사인 (주)초롱빵집이 **순자산을 나눈다**. **순자산 = 자산 - 부채(빚)!**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무조건 문제로 출제! **식으로 미리 정리**해두자.
- ②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신설 회사 (주)초롱빵집 순자산 / 분할 전 (주)초롱 회사 순자산**. 마찬가지로 식 정리!
- ③ 분할 비율이 0.3이면 신설 회사인 (주)초롱빵집이 분할 전 (주)초롱 순자산의 30%를 갖고, 존속 회사인 (주)초롱이 나머지를 갖는다.
- ④ 더 구체적으로 설명. 계산이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다행이군.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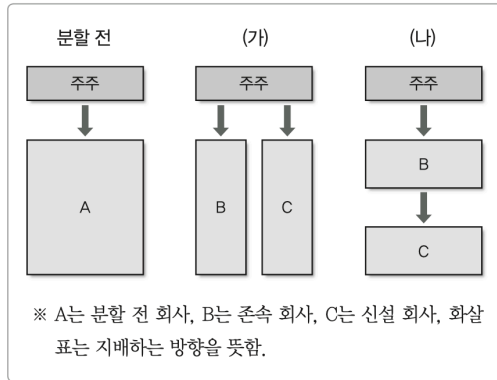
(4단락)

①이러한 방식으로 신설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된다. ②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율만큼 존속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되고 신설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된다. ③즉 분할 전 지분율 10%인 주주는 분할 후에도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된다. ④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존속 회사가 가지고 가는 형태이며,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다. ⑤그래서 존속 회사는 모회사, 신설 회사는 자회사라고 부르는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⑥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존속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되지만, 신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므로 존속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 ① 그래.. 이제부터 어려울 것 같네.. 회사를 나누었으니 회사 주주도 새로 정해야하지 않겠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누어 알려줄 건가봐.
- ② 먼저 **인적 분할**부터 알려주네. 분할 전 (주)초롱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지분율)만큼 존속 회사 (주)초롱의 지분도 갖고, 신설 회사 (주)초롱빵집의 지분도 갖는다.
- ③ 분할 전 (주)초롱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 **지분율이 10%인 주주는 회사 분할 이후에도 존속 회사 (주)초롱과 신설 회사 (주)초롱빵집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율을 갖고 회사를 직접 지배**한다. 직접 지배한다는 말은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걸 뜻해. 주식을 왜 사는지 알고 있지..? 만약 내가 애플이 발행한 주식 중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구매했으면, 애플이 나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는 내 지분율인 10%만큼 애플이 번 돈을 받을 수 있어(**이익 배당**). 그런데 만약 애플이 파산한다면 내가 애플에 투자한 돈은? 돌려받지 못해. 그러니까 애플이 망하면 안되겠지? 그래서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거지.
- ④ 이번엔 **물적 분할**을 설명하고 있어. 신설 회사인 (주)초롱빵집이 발행한 주식 모두 존속 회사인 (주)초롱이 가지고 간대. 또한 (주)초롱빵집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이 곧 (주)초롱빵집의 순자산이래. 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많이 어렵지? 이럴때는 문맥과 뉘앙스를 최대한 파악해서 끼워 맞추기를 해야 해. '반면에' 라고 했으니 인적 분할은 (주)초롱(존속 회사)은 (주)초롱대로, (주)초롱빵집(신설 회사)은 (주)초롱빵집 대로 각각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서는 주주가 (주)초롱(존속 회사)과 (주)초롱빵집(신설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물적 분할에서는 **(주)초롱빵집(신설 회사)의 주식을 (주)초롱(존속 회사)가 가지고 있고, (주)초롱(존속 회사)의 주식은 회사 분할 하기 전 이미 (주)초롱의 주주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줄게~ 다음으로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다**는 표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주식 평가액이 뭔지조차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해.. 이럴 때는 억지로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왜 저런 문장을 썼을까? 문제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해봐야해. 아까 3단락에서 **분할 비율을 구하는 식**을 제시했는데, 식에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지? **순자산은 자산 - 부채(빚)** 이라고 식을 썼고. 이번에는 **순자산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거야. 물적 분할일 때는 **신설 회사의 주식 평가액 = 신설 회사의 순자산**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거지. 그렇다면 나중에 <보기> 문제에서 신설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얼마인지만 제시해주고 물적 분할일 경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라고 선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 ④문장을 읽으면서 **'어, 이게 무슨 말인 거지? 주식 평가액 = 순자산?' → '순자산은 3단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디 보자.. 아 순자산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지.'** → **'아, 그럼 지금 이 문장은 물적 분할 상황에서 순자산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거구만. 이따가 <보기>문제 선지에서 써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국어 1등급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야!
- ⑤ 물적 분할의 경우 존속 회사인 (주)초롱을 **모회사**, 신설 회사인 (주)초롱빵집을 **자회사**라고 한대.

[Legal Mind] EBS analysis

- ⑥ 물적 분할에서 결국 **주주는 모회사인 (주)초롱의 주식을 직접 지배, 자회사인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간접 지배** 한다는 거지. **모회사인 (주)초롱이 자회사인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는 거고! 그림으로 보자. (가)상황이 인적 분할, (나)상황이 물적 분할이야.



(5단락)

①한편 회사의 분할로 인해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근로자의 승계 문제가 있다. ②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는 신설 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했다. ④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이다. ⑤만약 '(주)초롱'의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된 '(주)초롱빵집'에 대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하자. ⑥기업 공개란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⑦존속 회사 측에서는 '(주)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 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존 주주들을 설득시킬 것이다. ⑧대신에 기업 공개 결과 '(주)초롱빵집'에 대한 '(주)초롱'의 지분율은 감소한다. ⑨그래서 제빵 부문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 했던 기존 주주들은 기업 공개에 대해 반대를 할 수도 있다.

- ① 이번 단락에서는 회사 분할로 생긴 쟁점(서로 다투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근로자 승계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 근로자 승계는 대체 뭘까?(이제 그만 알고 싶은데..ㅠㅠ)
- ② 법에 따라 근로자 승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나봐. **민법**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상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근로자 승계가 뭔지 알 수 있어. **존속 회사 (주)초롱이 근로자의 권리를 신설 회사 (주)초롱빵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회사에서 고용자들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해고도 하는 거잖아? 만약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삼성모바일로 분할되었고 내가 고용 승계 되었다면, 나는 이제부터 삼성모바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지.
- ③ 대법원은 **상법을 우선 적용**했어. 근로자 동의가 없이도 근로자의 권리를 신설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고 판결 내린 거야.
- ④ 이번엔 다른 쟁점을 또 소개하고 있네.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래.
- ⑤ 존속 기업인 (주)초롱의 경영자가 **물적 분할**로 나뉘어진 신설 회사 (주)초롱빵집을 **기업 공개**하려고 한대.
- ⑥ 기업 공개가 뭔지 모르겠지? 바로 알려주네. 기업 공개란 **회사가 가진 지분(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물적 분할된 상황이라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원래 주주들이 아니라 (주)초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거라고 4단락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인데, 경영자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 ⑦ 아, 그래서 존속 회사 (주)초롱 측에서 (주)초롱의 **주주들을 설득**시킬 거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판매할 수 있는 거지.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비싸게 팔면 존속 회사 (주)초롱의 순자산이 늘어난대. (주)초롱의 순자산이 늘면 (주)초롱의 주식의 가치(평가)도 높아지고. 왜 그런 건지는 역시나 설명해주지 않아. 작년 수능 브레튼우즈 체제 지문 기억나지? 정보들을 제시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도 제시해주는 하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잖아?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순자산이 늘면 회사의 가치와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내용은 19년 7월 학력평가 국어 [재무레버리지] 지문에서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길 바라.
- ⑧ 대신 (주)초롱에서 (주)초롱빵집을 기업 공개하면 (주)초롱이 가지고 (주)초롱빵집의 **지분은 줄어**들지. 이걸 쉽지? 기업 공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뜻이었으니까.
- ⑨ 원래부터 회사 분할 이전 (주)초롱의 제빵이 유명했었기에 (주)초롱의 주식을 샀던 주주들은 (주)초롱빵집의 지분을 파는 것(기업 공개)에 대해 반대하겠지!

(6단락)

① 회사 합병은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 회사라 한다. ② 그리고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 회사의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합병 대가라고 한다. ③ 합병의 대부분은 흡수 합병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 회사가 되어 소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④ 흡수 합병을 위해서는 존속 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다. ⑤ 만약 결의가 되었다면 합병 대가로 존속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⑥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 회사 또는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⑦ 다만 이 권리는 회사 분할이 결의 되었을 때 분할에 반대하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 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엔 **회사 합병**.. 회사 분할과 반대로 여러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거래.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사 합병을 한다고 1단락에서 말했었어. 이 때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 회사**라고 한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자!
- ②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 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자기가 보유했던 주식 지분의 가치만큼 합병된 회사의 주식(**합병 대가**)을 받는데.
- ③ 합병도 여러 방식이 나뉘어져 있나봐. 대부분 **흡수 합병** 방식이래. **한 개 회사만 존속 회사**가 되어 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사라지는 방식임을 알 수 있어.
- ④ 흡수 합병 때도 역시 **주주 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찬성을 구해야 하는군.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대**. 결의 조건은 2 단락에서 제시했었지?
- ⑤ 회사 합병에 결의한, 즉 **찬성**한 주주들은 합병 대가를 받는데. 이미 ②문장에서 설명했어.
- ⑥ 합병에 **반대**한 주주(존속 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포함)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긴대. 자기들이 샀던 주식을 다시 그 회사에 되팔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지.
- ⑦ 다만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회사 합병을 반대할 때만 주어지고, **회사 분할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는데. 회사 분할 반대와 회사 합병 반대의 **차이점**을 제시했으니, 선지에서 물어볼 확률이 높아. 체크해두자!

(7단락)

① 삼각 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소멸 회사 간의 합병이다. ② 삼각 합병은 자회사가 소멸 회사를 인수하지만, 합병 대가로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③ 그래서 삼각 합병의 경우에 자회사는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사전(事前)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삼각 합병을 하려면 자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⑤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⑥ 그래서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 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삼각 합병**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 삼각 합병이란 **모회사, 자회사, 소멸 회사 간의 합병**이래. 모회사, 자회사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된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라고 아까 4단락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연결 짓자.
- ② **자회사가 소멸 회사를 인수**한대. 예시를 들게. (주)초롱빵집이라는 자회사(신설 회사)가 (주)보통케이크라는 소멸 회사를 인수하면 보통케이크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보통케이크의 순자산(자산-부채) 모두 (주)초롱빵집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주)보통케이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합병 대가로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모회사(존속 회사)인 (주)초롱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야.
- ③ 그래서 합병하기 전에 (주)보통케이크의 주주들에게 줄 (주)초롱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대.
- ④ 6단락과 마찬가지로 삼각 합병을 할 때에도 **주주 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결의**가 필요하네.
- ⑤ **결의 조건도 동일**. 그런데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대. 합병 대가는 모회사 (주)초롱의 주식을 주면서 왜 (주)초롱 주주들의 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걸까? 다시 4단락으로 돌아가자. 물적 분할 방식으로 회사가 분할되면 **기존 주주들은 모회사의 주식은 직접 지배하지만, 자회사의 주식은 간접 지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권리가 없는 거야! 수능에서는 지금 이 문장에 ㉠표시 해놓고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자꾸 단락끼리 이어서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
- ⑥ 합병이 결정되면 자회사 (주)초롱빵집과 소멸 회사 (주)보통케이크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병을 결의하는 주주 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했던 자회사와 소멸 회사 주주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되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지만, **모회사 주주들은 주주 총회를 열지도 않을 테니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⑤문장, 6단락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와, 드디어 끝났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